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감지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(제5조제4호나목)
- 나.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,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(제5조제31호, 32호, 33호 및 34호)
- 다.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(제5조제33호)
- 라.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(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)
- 마.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으로 개정(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, 제2의2호)
- 바. 작동표시장치 밝기 기준 강화(제6조제2호마목)
- 사.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 반복시험 신설(제7조제1항제2호)
- 아.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 추가 신설(제8조제3항제1호 및 2호, 같은 조 제5항)
- 자. 주위온도 시험 강화(제11조제1항, 제2항)
- 차.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도입(제13조제2항)
- 카. 차동식스포츠형감지기 부작동시험 강화(제14조제2호나목)

- 타. 정온식 축적형 및 감도 설계값 시험(제16조제1항, 제2항제1호, 제16조의2)
- 파. 이온화식 및 광전식스포츠형 감지기 감도 설계값 시험 신설 및 아날로그 허용오차 범위 강화(제18조의2, 제19조제5항제2호, 제19조의2)
- 하. 노화시험, 살수시험, 반복시험 강화(제25조, 제26조의2제2호, 제28조)
- 거. 광원감시시험 및 자동보정시험 신설(제32조의2, 제32조의3)
- 너.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(제37조의2)